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배렴가옥)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1159

2023. 09. 11.
주택공간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8. 14. 서울특별시장 제출

2. 회부일자: 2023. 8. 21.

3.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0회 임시회 제5차 주택공간위원회 (2023. 9. 11. 상정·의결)

Ⅱ. 제안설명 요지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1. 제안이유

가. 서울 공공한옥 중 사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역사가옥, 배렴가옥의 민간위탁 협약만료에 따라, 배렴가옥의 전문적, 효율적 운영을 지속하기 위하여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 하고자

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34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 :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배렴가옥) 운영지원

나. 위탁 개요

○ 대상시설 : 배렴가옥(등록문화재 제 85호)

○ 소 재 지 : 종로구 계동길 89(북촌 지역)

○ 시설규모 : 대지 257.9㎡, 연면적 128.93㎡

○ 위탁기간 : 3년(2024.1.1. ~ 2026.12.31.)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재위탁)

○ 소요예산(안) : 285백만원 ※ '23년 예산: 270백만원

다. 주요 위탁내용

○ 역사인물(배렴, 송석하) 기반한 전시 조성·운영

○ 인문학, 서화전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운영

○ 시민주도(신진 작가 등) 문화예술 기획 및 대관전시 운영

○ 지역 내 공공한옥 간 연계 협력사업 고도화

○ 한옥 주거문화(K-리빙)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시민홍보 및 대시민 서비스를 위한 사무국 구성·운영 등

라. 추진근거

○「문화재보호법」제34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34조

○「서울 공공한옥 역사가옥 2개소(홍건익가옥, 배렴가옥)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한옥정책과-5367, '23.6.8.)

마. 민간위탁 지속 운영 필요성

○ 배렴가옥은 북촌 화가 배렴, 민속학자 송석하가 거주했던 가옥으로 관련 콘텐츠 활용 및 북촌 도시형한옥에 기반한 다양한 문화·예술·건축의 테마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전문적 운영 위해 민간위탁 추진, 전통에 기반한 재창조를 논의하고 북촌의 문화정체성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옴

○ 그동안 구축해 놓은 프로그램과 공간 노하우를 잘 연결하고 시민의 문화적 창의성 실현을 위한 전문적 프로그램 지속 개발 및 올해 발표한 〈서울한옥 4.0〉 실행을 위한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업, 네트워킹 등 서울한옥 정책 확산거점으로 활용도 증대 등 프로그램 고도화 위해서는 전문단체의 지속적인 민간위탁 필요함

바. 기대효과

○ 가옥의 시설관리와 정책적 사무는 시에서 유지하고, 가옥의 전시기획·조성 및 대시민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무는 민간위탁으로 분리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능률성·효율성 확보

○ 전문 역량을 갖춘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가옥의 특성과 장소성을 반영한 종합적 활용 및 대시민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 만족도 제고 및 서울 공공한옥의 경쟁력·지속성 확보

3. 추진일정

가. 추진현황

○ 「역사가옥 2개소 민간위탁 추진계획」 (한옥조성과-10481, '16.9.28.)

○ 역사가옥 2개소(홍건익가옥, 배렴가옥) 사무 민간위탁 운영('17.5.1.~)

○ 「역사가옥 2개소 민간위탁 분리운영 추진계획」 (한옥건축자산과-2092, '20. 2.20.)

○ 역사가옥 2개소(홍건익가옥, 배렴가옥) 개별 민간위탁 운영('21.1.1.~)

○ 「역사가옥 2개소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한옥정책과-5367, '23.6.8.)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23.7.5. 조직담당관)

위탁사무명	유 형		위탁기간	심의결과
서울 공공한옥 역사가옥 배렴가옥 운영	재위탁	사무형	3년	적정

나. 향후계획

○ 제320회 시의회 동의안 제출 및 의결('23.8.28. ~ 9.15.)

○ 배렴가옥 수탁기관 공모, 적격자 심의위원회('23.9월 ~ 10월)

○ 계약심사 및 협약체결, 위탁사무 인수인계('23.10월 ~ 12월)

○ 배렴가옥 수탁기관 운영('24.1월~)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가. 제안경위

○ 이 동의안은 종로구 북촌(계동길 89)에 위치한 공공한옥인 배렴가옥(등록문화재 제89호)의 위탁 기간이 '23년 말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재위탁[1]하여 전통한옥의 홍보와 시민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1항[2]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8월 2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배렴가옥 위치(좌) 및 사진(우)(출처: https://www.ohseoul.org)>

나. 공공한옥 및 배렴가옥 개요

○ 공공한옥은 서울시, 자치구 또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소유한 한옥[3]으로, 서울시는 총 34개소의 공공한옥을 소유하고 있으며(**검토보고서 붙임 2. 참고**), 전통 공예시설 및 문화 전시시설, 주민 이용시설, 주거 체험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있음.

<서울시 공공한옥 운영 현황>

구 분		계	전통공예	문화전시	주민이용	주거체험	준비중
소유	재산관리관						
계		34	9	9	9	3	4
시	한옥정책과	25	8	7	8	–	2
SH	도시정비사업처	8	1	2	–	3	2
시+SH	한옥정책과	1	–	–	1	–	–

◦ 전통공예시설(9) : 단청, 매듭, 홍염, 소반, 직물놀이, 목공예, 금박, 색실문양누비, 발효공방
◦ 문화전시시설(9) : 한옥협동조합, 북촌빈관, 홍건익가옥, 북촌문화센터(교육관), 북촌공예체험관, 북촌한옥청, 북촌한옥역사관, 배렴가옥, 북촌문화센터
◦ 주민이용시설(9) : 마을안내소(서촌 퍼멘티드), 옥인육아어울림센터, 서촌주민사랑방, 가회동 주민공동시설(가회동 중간집), 북촌주민공동시설, 북촌주민공동시설(별관), 마을서재&쉼터갤러리, 한옥지원센터, 은평한옥마을 어울림터
◦ 주거체험시설(3) : 계동2-39, 계동32-10, 원서동24외1
※ 준비중(4) : 북촌라운지(계동 15-6), 서촌라운지(누하동 259), 임대한옥(원서동 38, 필운동 180-1)

3)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지원대상)**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한옥 및 한옥마을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공공한옥(서울특별시, 자치구 또는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이 소유한 한옥)**

- 이 중 금번 민간위탁 동의 대상인 배렴가옥은 서울시가 소유한 공공한옥으로서, 1930년대 신축된 후 역사학자 송석하(宋錫夏, 1904~1948) 가 거주하였고, 이후 근대 실경산수화를 그렸던 한국화가 제당 배렴(霽堂 裵濂, 1911~1968)이 1959년부터 작업실로 사용했던 곳으로, 2004년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이래, 현재 역사인물 및 가옥을 중심으로 한 전시·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살림집의 친근함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일상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북촌의 생활사를 살펴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 중에 있음.

○ 배렴가옥은 민간위탁금으로 '21년도부터 매년 평균 약 2억6,9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이 동의안이 채택되어 '24년도 재위탁을 추진할 경우 총 2억 8,500만원의 예산[4]이 투입될 예정임.

<배렴가옥 연도별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과목	총액	주요내용
2021	민간위탁금	266,648	인건비 119,047 운영비 37,941 사업비 80,666 일반관리비 4,753 부가세 24,241
2022	민간위탁금	270,000	인건비 123,739 운영비 41,063 사업비 75,840 일반관리비 4,813 부가세 24,545
2023	민간위탁금	270,000	인건비 144,761 운영비 24,263 사업비 71,618 일반관리비 4,813 부가세 24,545
2024(안)	민간위탁금	285,000	인건비 148,537 운영비 30,538 사업비 74,936 일반관리비 5,080 부가세 25,909

다. 배렴가옥 운영 현황

○ 지난 2001년 3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배렴가옥을 매입한 후 서울시와 무상 사용대차계약을 체결('22.12.)하였고, 서울시는 해당가옥을 직접 관리해오다 2017년 5월부터 공공한옥의 전문적 관리·운영을 위해

4) '24년도 사업비 증액은 예산과 의견에 따라 인건비 1.7%, 운영비 2.6%를 인상하여 산출한 결과에 따른 것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였음.

- 최초 민간 위탁 당시 홍건익가옥과 배렴가옥은 하나의 민간업체에서 위탁 운영해 왔으나 두 가옥의 동시 운영이 어려워 수탁기관이 두 차례나 협약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에 서울시는 2019년 8월부터 두 곳의 공공한옥에 대한 민간위탁을 별도로 추진하게 되었음[5].

○ 현재 배렴가옥은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상근 3명, 비상근 2명)이 수탁기관으로 선정(2021.1.1.~현재)되어 관리·운영 중에 있으며, 기획전시 및 예술·인문강좌 등 프로그램 개최, 도슨트 운영 등 총 224회의 프로그램 운영과 누적 133,249명의 방문객이 배렴가옥을 체험하였음.

○ 서울시 민간위탁 점검('23.4.13/'23.5.24.)결과, 배렴가옥은 한옥역사관, 한옥청 등 인근 공공한옥과의 프로그램 연계·시너지효과를 창출하였고, 1930년대 북촌 도시형 한옥이자 살림집이었던 정체성을 토대로 현대적이고 창의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음[6].

○ 현행 수탁기관은 민간위탁 운영 성과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받는 등, 관련 규정상 재계약[7]이 가능한 상황이나, 집행기관은 금년 2월 발표한 〈서울한옥 4.0〉 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실행과 한옥주거문화(K-리빙)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기관 및 단체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

5) 제293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배렴가옥)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의안번호1454) 참고.

6) 서울시는 민간위탁 공공한옥에 대해 매년 2회의 사업평가(전문가 평가/운영회계 점검)를 실시하고 있음.

7)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신규 수탁기관의 전문적 기획 역량을 통해 시민의 문화 수요에 부응하고, 배렴가옥의 운영 고도화를 도모하기 위해 재계약 대신 재위탁을 추진(**검토보고서 붙임3.** 참고)하게 된 것으로 파악됨.

- 참고로, 공공한옥은 시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재산 관리위탁'[8], '사무 민간위탁'[9],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10]의 3가지 방식을 적용(**검토보고서 붙임4.** 참고)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공공한옥 34개소 중 12개소는 관리위탁, 4개소는 민간위탁, 6개소는 사용수익허가, 8개소는 시 직영운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4개소는 준비중에 있음(배렴가옥의 경우 사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

계	위탁 운영			시직영	준비중
	관리위탁	사무민간위탁	사용수익허가		
34	12(소규모 공방 등)	4(센터 등 문화재)	6(주거체험시설 등)	8(한옥청 등)	4

라. 재위탁 추진방향

○ 서울시는 오는 2024년 1월부터 재위탁을 통한 운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재위탁 시 ▲문화시설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실적을 갖춘 비영리 법인 등 다양한 단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자격을 완화하고, ▲민간위탁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신규 수탁기관이 선정되더라도 25%~80%정도의 고용승계를 유지토록 하며, ▲〈서울한옥 4.0〉[11]의 실행을 위한 거

---

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9)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1) 「서울한옥 4.0 재창조 추진계획」(2023.2.3.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9호)

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된 프로그램과 강화된 시민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정기적인 회계처리를 강화하는 등 민간위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임.

<공공한옥 민간위탁 추진절차>

①민간위탁 운영평가 위원회 심의	▶	②시의회 동의	▶	③일상감사	▶	④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	⑤비용 및 계약 심사	▶	⑥협약 및 인계·인수

<배렴가옥 재위탁 추진 개요(안)>

ㅇ 위탁사무 : 서울 공공한옥 역사가옥 배렴가옥 운영
ㅇ 위탁유형 : 예산지원형(사무형 위탁)
ㅇ 위탁기간 : '24.1.1.~'26.12.31(3년)
ㅇ 추진방법 : 공개모집 공고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수탁기관 선정
ㅇ 위탁내용 : 지역의 장소성과 가옥의 정체성을 반영한 가옥별 전시 및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 시설 운영 전반

배렴가옥 (서화전문 전시, 인문·예술·건축 창작공간)
- 역사인물(배렴, 송석하) 기반한 전시 조성·운영
- 인문학, 서화 전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시민 주도(젊은 작가 등) 기획·대관 전시 운영
- 지역 내 공공한옥간 연계 협력사업 고도화
- 한옥 주거문화(K-리빙) 체험 프로그램 운영

ㅇ 운영인력 : 상근 3명, 비상근 2명
ㅇ '24년 사업비 : 285백만원(협약 시, 계약심사 등 통해 변경 가능)

마. 종합의견

○ 이 동의안은 금년 말 민간위탁 계약기간의 종료를 앞둔 공공한옥(배렴가옥)에 대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재계약이 가능함에도, 변화된 서울시의 한옥 정책에 부응하고, 보다 고도화된 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적 관리를 위해 재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가옥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검

토가 가능하다고 사료됨.

- 다만, 기존 3년간의 위탁기간에 대한 운영 평가가 긍정적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신규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안정적 고용 승계 및 관리·운영상 역량과 전문성이 사장되지 않도록 있도록 철저한 업무 인수인계 및 행정지원이 필요하겠음.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없음

Ⅵ. 심사결과 : 원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배렴가옥)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1159

제출년월일 : 2023년 8월 14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서울 공공한옥 중 사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역사가옥, 배렴가옥의 민간위탁 협약만료에 따라, 배렴가옥의 전문적, 효율적 운영을 지속하기 위하여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34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 :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배렴가옥) 운영지원

나. 위탁 개요

○ 대상시설 : 배렴가옥(등록문화재 제 85호)

○ 소 재 지 : 종로구 계동길 89(북촌 지역)

○ 시설규모 : 대지 257.9㎡, 연면적 128.93㎡

○ 위탁기간 : 3년(2024.1.1. ~ 2026.12.31.)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재위탁)

○ 소요예산(안) : 285백만원 ※ '23년 예산: 270백만원

다. 주요 위탁내용

○ 역사인물(배렴, 송석하) 기반한 전시 조성·운영

○ 인문학, 서화전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운영

○ 시민주도(신진 작가 등) 문화예술 기획 및 대관전시 운영

○ 지역 내 공공한옥 간 연계 협력사업 고도화

○ 한옥 주거문화(K-리빙)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시민홍보 및 대시민 서비스를 위한 사무국 구성·운영 등

라. 추진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34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34조

○ 「서울 공공한옥 역사가옥 2개소(홍건익가옥, 배렴가옥)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한옥정책과-5367, '23.6.8.)

마. 민간위탁 지속 운영 필요성

○ 배렴가옥은 북촌 화가 배렴, 민속학자 송석하가 거주했던 가옥으로 관련 콘텐츠 활용 및 북촌 도시형한옥에 기반한 다양한 문화·예술·건축의 테마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전문적 운영 위해 민간위탁 추진, 전통에 기반한 재창조를 논의하고 북촌의 문화정체성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옴

○ 그동안 구축해 놓은 프로그램과 공간 노하우를 잘 연결하고 시민의 문화적 창의성 실현을 위한 전문적 프로그램 지속 개발 및 올해 발표한 〈서울한옥 4.0〉 실행을 위한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업, 네트워킹 등 서울한옥 정책 확산거점으로 활용도 증대 등 프로그램 고도화 위해서는 전문단체의 지속적인 민간위탁 필요함

바. 기대효과

○ 가옥의 시설관리와 정책적 사무는 시에서 유지하고, 가옥의 전시기획·조성 및 대시민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무는 민간위탁으로 분리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능률성·효율성 확보

○ 전문 역량을 갖춘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가옥의 특성과 장소성을 반영한 종합적 활용 및 대시민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 만족도 제고 및 서울 공공한옥의 경쟁력·지속성 확보

3. 추진일정

가. 추진현황

○ 「역사가옥 2개소 민간위탁 추진계획」 (한옥조성과-10481, '16.9.28.)

○ 역사가옥 2개소(홍건익가옥, 배렴가옥) 사무 민간위탁 운영('17.5.1.~)

○ 「역사가옥 2개소 민간위탁 분리운영 추진계획」 (한옥건축자산과-2092, '20. 2.20.)

○ 역사가옥 2개소(홍건익가옥, 배렴가옥) 개별 민간위탁 운영('21.1.1.~)

○ 「역사가옥 2개소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한옥정책과-5367, '23.6.8.)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23.7.5. 조직담당관)

위탁사무명	유 형		위탁기간	심의결과
서울 공공한옥 역사가옥 배렴가옥 운영	재위탁	사무형	3년	적정

나. 향후계획

○ 제320회 시의회 동의안 제출 및 의결('23.8.28. ~ 9.15.)

○ 배렴가옥 수탁기관 공모, 적격자 심의위원회('23.9월 ~ 10월)

○ 계약심사 및 협약체결, 위탁사무 인수인계('23.10월 ~ 12월)

○ 배렴가옥 수탁기관 운영('24.1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재 보호법」 제34조

>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②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문화재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34조

> **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③ 시장은 공공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 등에 서울 공공 건축자산의 운영에 관한 사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자에게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2024년 예산 편성(예정)

다. 합　　의 : 조직담당관 심의('23. 7. 5.)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결과(적정)

※ 작성자 : 주택정책실 한옥정책과 유미옥(☎ 2133-5582)